

세 법

[강평 및 해설 : 박창한 교수]

총 평

올해의 국가직 9급 시험의 눈에 띄는 특징은 우선 계산문제가 4문제나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계산문제가 0~2문제 정도로 출제되는 것이 평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2016년과 2017년에 2년 연속 3문제씩 출제되고 2018년에는 예년대로 1문제가 출제되었으나 올해 2019년에는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 9급 세법개론의 새로운 경향으로 봐야 할 듯 합니다.

또한, 난이도면에서는 정답은 비교적 쉬운 내용으로 구성하였지만, 정답 이외의 일부 지문들이 상대적으로 구석진 부분에서 출제되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다만, 정답부분은 전형적인 부분이 많아서 시험장에서의 체감상 난이도보다는 실제 점수는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문제의 구성은 총칙 1문항, 국세기본법 3문항, 소득세법 4문항, 부가가치세법 4문항, 법인세법 5문항, 국세징수법 2문항, 상속세및증여세법 1문항의 비율로 출제되었으며, 계산문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2문항(공통매입세액 안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법인세법에서 2문항(대손충당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출제되었습니다.

시험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01. 「소득세법」 상 거주자의 주식 등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법령에서 정하는 기타자산 및 국외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국외전출자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주권상장법인인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법령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 20%
- ② 주권비상장법인인 증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 10%
- ③ 주권상장법인인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30%
- ④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법령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10%

정답 ③

- ① 주권상장법인인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법령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 10%
- ② 주권비상장법인인 증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 20%
- ④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법령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아님

1. 대주주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 30%
	2) 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 20% (3억 초과분은 25%)
2. 대주주가 아닌 자	1) 중소기업의 주식 : 10%
	2) 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 20%

02.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임원 및 지배주주 등은 법령상 정의를 충족한다)

- ① 법인이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②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합병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정답 ④

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로 계산한 금액까지는 손금인정된다.

구분	임원퇴직급여 한도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위임지급규정 포함)
위 외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03.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름이 있는 경우 관례에 의함)

- ① 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는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
- ②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거주요건)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어렵게 규정을 개정하였지만 경과규정을 두어 법령시행 후 1년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법개정은 소급과세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 ③ 엄격해석으로 세법상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법규정의 유추적용이 허용된다.
- ④ 조세법률주의는 과세권의 자의적 발동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으로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정답 ③

문리해석을 원칙으로 하되, 문리해석만으로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때 보충적·제한적으로 논리해석을 허용한다. 단, 논리해석 중 확장·유추해석은 허용하지 않음이 통설이다.

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1월 1일~12월 31일)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법」 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의 결과가 제17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영향은?

○ 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계정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단위: 원)			
당기상계	10,000,000	전기이월	12,000,000
차기이월	15,000,000	당기설정	13,000,000
계	25,000,000	계	25,000,000

- 전기이월 중에는 전기에 한도초과로 부인된 금액 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당기상계는 법인세법에 따른 대손요건을 충족한 매출채권과 상계된 것이며, 그 외 대손처리된 매출채권은 없다.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법인세법 상 매출채권 잔액은 다음과 같다.

- 제16기 말 현재 매출채권: 250,000,000원
- 제17기 말 현재 매출채권: 300,000,000원

- ① 2,000,000원 감소
- ② 1,000,000원 감소
- ③ 0원(변동 없음)
- ④ 1,000,000원 증가

정답 ③
<손금산입> 전기대손충당금 한도초과 3,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3,000,000 (유보)
* 한도 : 300,000,000 × Max [1%, 10,000,000/250,000,000=4%]
= 12,000,000
한도초과액 : 15,000,000 - 12,000,000 = 3,000,000

11. 「국세징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체납자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 ③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로 한다.
- ④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계속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답 ①
②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③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으로 한다.
④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 1) 조세불복 중인 경우
- 2) 재해로 인한 심한 손실, 사업에 현저한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의 사유로 징수유예된 경우
- 3)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 4) 부가가치세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

12.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 ②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③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과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불복방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 ④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정답 ④
① 「국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사청구·심판청구를 배제하고 반드시 「국세기본법」 또는 「감사원법」에 따라 불복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②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서 제기할 수도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도 있다.
③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과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 중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다. 즉, 감사원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3.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도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 ② 연금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연금액에서 법령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연금소득공제액이 9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백만 원을 공제한다.
- ④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④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연말정산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물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령에 따라 물납에 해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국채 및 공채보다 먼저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 ② 세무서장은 법령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도 물납에 해당할 수 있다.
- ④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더라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②

① 법령에 따라 물납에 총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 1) 국채 및 공채
- 2) 상장주식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유가증권(국채 및 공채를 제외)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제외)
- 4) 채권·증권 중 기타의 유가증권 [1), 2), 5) 제외]
- 5) 비상장주식 등 -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에 총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의 비상장주식 등
-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③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물납에 총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

④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15. 국세징수법령상 국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이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에도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납세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③ 세무서장은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되었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법령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①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이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에는 체납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 체납의 정당한 사유

사전적 제한 정당한 배제사유	사후적 제한 정당한 배제사유
공시송달	공시송달
천재 지변 납세자·동거가족 질병 사업에 심한 손해	천재 지변 납세자·동거가족 질병 사업에 심한 손해
강제집행, 어음 거래정지처분, 경매개시	강제집행, 어음 거래정지처분, 경매개시
총채신추산가액 < 체납처분비 총채신추산가액 < (체납처분비 + 선담보채권)	총채신추산가액 < 체납처분비 총채신추산가액 < (체납처분비 + 선담보채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 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
×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

16. 갑을복지재단(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은 2018년에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2018년에 국내에서 예금이자 1억 원을 받고 14%의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8천6백만 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2018년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건물의 임대소득 1억 원이 있다.

갑을복지재단이 예금이자를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한다는 가정 하에 법인세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신고해야 할 2018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단, 갑을복지재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이 아니며, 기부금과 지방소득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0원
- ② 5천만 원
- ③ 1억 원
- ④ 1억 8천6백만 원

정답 ②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1억 원 + 1억 원) - (1억 원×100% + 1억 원×50%)* = 5천만 원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 = 이자·배당소득금액(비영업대금이익은 제외) + (수입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이자·배당소득금액) × 50%**

** 비영업대금이익은 기타의 수익사업소득과 함께 50%를 적용하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80%를 적용한다.

17.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산을 법령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산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 ③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으로 한다.
- ④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장부가액은 평가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정답 ④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증액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장부가액은 평가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감액 평가한 경우의 평가손실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